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197 무고,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유시동(기소), 김도윤, 김규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한나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6.경 위 동호회의 인터넷 게시판에 위 동호회의 총무인 피해자가 회
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위 동호회에서 강제 퇴장
을 당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5. 6. 14. 1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옆 방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골프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들고 있던 생수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5. 6. 23.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2025. 6. 14.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B이 갑자기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의 팔 부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던 고소인이 B의 뺨을 쳤고, B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고소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B은 고소인을 폭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으로 인한 안면부 증거사진, 폭행으로 인한 좌측다리 증거사진, 폭행으로 인한 우측 팔 증거사진, 폭행으로 인한 머리칼 빠짐 증거물, 수사보고서(D 식당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카카오톡 자료 제출), 메시지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생수병과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2항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E, F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F이 전화를 받는다고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E에게 "야 너 왜 내 전화 안받아"라고 말하고 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쳐다보더니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쳤고, 손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았다. 피해자도 손을



뺨아서 피고인의 머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를 생수병으로 때린 후 뺨을 때렸고 가방으로도 피해자를 때려 물건이 쏟아졌으며 이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물건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A의 진술에 의하면 B도 A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하는데 어떨까요'라는 질문에 '제가 말리러 가는 순간에 B이 A의 머리채를 잡았을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때는 서로 붙잡고 싸우는 모습은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와 같이 진술한 것에 대하여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저항으로 봤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의 태도, 분위기 등 변론에서 보여지는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E의 목격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소라 _____